

질의상세

질의내역

접수번호 : 0002052453

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문의				
요청자	정영철	이메일	gaenjo79@korea.kr	접수일	2025-02-24 11:30:13
소속부서	노인장애인과	연락처	0612704884		
업무분류	개별사업/장애인복지/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질의구분	정책 및 지침문의
관련법령					
질의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해 질의합니다. 구축아파트이며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만들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현행 규정에 맞지는 않지만(장애인 안내표지 및 바닥색깔 누락, 장애인 바닥표시는 표시됨)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 및 주차편의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를 하여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됐고 비장애인(신고를 당하신 분) 분은 현행 규정에 맞지 않는 주차구역이라 무효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침에는 과거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현행 규정에 맞지 않아도 유효한 주차장으로 보고 있으며 또, 바닥표시 안내 표시 등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울여 알 수 있다면 유효한 주차장으로 보고 있고, 복지부 콜센터에서도 현행 규정에 맞지 않아도 보행상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경우라면 유효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와 딱 맞게 지침 등에 규정이 돼 있지 않아 질의를 남기니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역

답변자	강충근	연락처	0647604701	진행상태	조치완료	처리에정일	
지침 이관여부	Y			담당부서	장애인권익지원과		

답변내용	1. 장애인 등의 권리보장과 편의증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장애인 표시 유무에 따른 단속기준'과 관련된 질의로 이해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에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과 주차구역선의 장애인 전용표시, 바닥면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등 통상의 주의의무를 통해 그곳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을 알 수 있는 상태라면, 과태료 부과 가능합니다. ○ 2024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따라 과거에 설치된 장애인주차구역도 으로 그 규격이 현행기준과 다르더라도 유효한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등을 통해 규격에 맞게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3. 답변 드린 내용에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3),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참고지침	
해시태그	